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
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정식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서식의 불필요한 정보 수집 요소를 제거하고 누락된 법정사항을 추가하는 등 정비하여 협의회규정 제출 사업(장) 정보를 체계적·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 규정 제출의무는 노사협의회에 있으므로 불필요한 제출인 정보를 삭제(안 별지 제1호서식)
- 나. 사업체 정보에 사업체 대표자명·상시 근로자 수·법인등록번호·사업자 등록번호를 신설하여 사업장 식별성을 높이고, 불필요한 노동조합 명칭·노동조합 대표자 성명·조합원 수를 삭제(안 별지 제1호서식)
- 다. 노사협의회 정보에 노사협의회 명칭·노사협의회 소재지·설치단위·설치 단위 사업자등록번호·설치단위 대표자명·설치단위 상시근로자 수·고충 처리위원 수를 신설하여 사업장 식별성을 높이며 누락된 법정사항 보완 및 설치사유·설치일자 등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(안 별지 제1호서식)

라. 첨부서류에 회의록을 신설하는 등 간명하게 정비(안 별지 제1호서식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미대상

고용노동부령 제 호
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[] 제정
[] 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사용자	사업체명	대표자명	
	주된 사무소 소재지(연락처) (☎)	상시 근로자 수(※ 사업 전체)	
	법인등록번호	사업자등록번호	
노사 협의회	노사협의회 명칭	노사협의회 소재지(연락처) (☎)	
	설치단위 사업 [] 사업장 []	설치단위 사업자등록번호 (※사업장단위 설치 시에만 기재)	
	설치단위 대표자명	설치단위 상시 근로자 수 ()명 (※사업장단위 설치 시에만 기재)	
	협의회규정 제정(변경)일자	노사협의회 위원 수 근로자위원()명 사용자위원()명	
	정기회의 회기	고충처리위원 ()명	

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제1항에 따라 [] 제정, [] 변경된 노사
협의회규정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(사용자)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1. (제정 또는 변경) 협의회규정 1부	수수료
	2. 회의록 1부	없음
	3. (변경 시) 신규조문대비표 1부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395